

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자금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2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8년 12월 11일
- 나. 발 의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12월 1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12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이형삼)

- 가. 제안이유
 - 도로굴착 복구 물량 증가 및 노후 불량도로 정비 물량증가로 당초 자금
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」
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
○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요구(안)

· 수입 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 입 계 획			비 고
	당초 수입액	변경액(증, 감)	변경후 수입액	
합 계	3,682,851	증)480,000	4,162,851	
예치금 회수	1,658,764	-	1,658,764	
이자수입	27,547	-	27,547	
기타수입 (부담금)	1,996,540	증)480,000	2,476,540	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

· 지출 계획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	편성목	지출계획			비고
		당초 지출액	변경액(증,감)	변경후 지출액	
합 계		3,682,851	증)480,000	4,162,851	
도로굴착복구	소 계	1,730,020	증)480,000	2,210,020	
	일반운영비	10,405	-	10,405	
	시설비 및 부대비	1,719,615	증)480,000	2,199,615	
불량맨홀 정비공사	소계	250,000	-	250,000	
	시설비 및 부대비	250,000	-	250,000	
여유자금관리	소 계	1,702,831	-	1,702,831	
	예치금	1,702,831	-	1,702,831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○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 불량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지출계획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17억 3,002만원, 불량맨홀 정비공사비 2억 5,000만원, 예치금 17억 283만 1천원 총 36억 8,285만 1천원 편성하였음.

○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

- 상수도 관련 굴착 허가 물량 증가 등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 증가와 노후 불량 도로정비 물량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 변경과 도로복구원인자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
- 수입계획에서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9억 9,654만원을 4억 8,000만원 증액한 24억 7,654만원으로 편성하고
- 지출계획에서 도로굴착 복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1,961만 5천원을 4억 8,000만원 증액한 21억 9961만 5천원으로 편성함.

○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

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기금의 재원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로굴착복구 공사, 불량 도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2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건 명 :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

다. 사업내용

- 도로굴착 복구공사, 불량맨홀 정비공사
-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 포함)

라.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(안)

1) 2018년도 자금수지 총괄(당초) 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, 감	항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, 감
합계	3,682,851	3,573,285	109,566	합 계	3,682,851	3,573,285	109,566
예치금 회수	1,658,764	1,563,000	95,764	비용자성 사업비	1,980,020	1,914,521	65,499
이자수입	27,547	11,745	15,802	기본경비	-	-	-
기타수입	1,996,540	1,998,540	△2,000	예치금	1,702,831	1,658,764	44,067

2) 2018년도 자금수지 총괄(변경)

가) 수입 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 입 계 획			비 고
	당초 수입액	변경액(증, 감)	변경후 수입액	
합 계	3,682,851	증)480,000	4,162,851	
예치금 회수	1,658,764	-	1,658,764	
이자수입	27,547	-	27,547	
기타수입	1,996,540	증)480,000	2,476,540	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

나) 지출 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	편성목	지출계획			비고
		당초 지출액	변경액(증,감)	변경후 지출액	
합 계		3,682,851	증)480,000	4,162,851	
도로굴착복구	소 계	1,730,020	증)480,000	2,210,020	
	일반운영비	10,405	-	10,405	
	시설비 및 부 대 비	1,719,615	증)480,000	2,199,615	
불량맨홀 정비공사	소계	250,000	-	250,000	
	시설비 및 부 대 비	250,000	-	250,000	
여유자금관리	소 계	1,702,831	-	1,702,831	
	예치금	1,702,831	-	1,702,831	

마.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사유

- 본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노후불량도로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당초에는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상수도 관련 굴착 허가 물량이 증가하는 등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 및 노후불량도로정비 물량증가로 인해 지출계획 변경 필요
-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해 수입계획 변경 필요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7조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

-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